#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00 발의연월일: 2020. 11. 17.

발 의 자:유동수·강민정·김두관

김승원 · 김한정 · 남인순

양정숙・오영환・이성만

이학영 · 전혜숙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,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·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,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사기관 등으로의 이첩 여부 결정 등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, 허위 신고 등 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고,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처리가 제한되어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신고가 접 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2, 제59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). 법률 제 호

#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5조의2(부패행위 등 조사) ① 위원회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부패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, 이해관계인 또는 참조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고, 이첩 또는 고발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신고사항", "신고", "접수된 신고사항" 및 "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"는 "위원회가 인정한 부패행위"로 본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, 의견·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제2항 중 "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"를 "신고자, 피신고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, 피신고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"로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 구에 응하지 않은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제59조(신고의 처리) ① (생 략)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③ ~ ⑦ (생 략) 제91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원회가 인정한 부패행위"로 본 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, 의 견 ·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(신고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-----신고자, 피신고 자,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진 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, 피신 고자.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9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

부과한다.

-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2 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자

③ • ④ (생 략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